

제7장 무역구제

제1절 긴급수입제한조치

제7.1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한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¹.

-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또는
- 나.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 1) 그 조치가 적용되는 시점에서 발효 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제7.2조 조건 및 제한

1. 한쪽 당사국은 제2항에 기술된 조사를 개시할 때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특히 조사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검토하고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협의는 직접 대면으로 또는 협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 밖의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2.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1가에 포함된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2조다호에 따라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2조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2조가호 및 제4.2조나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2조가호 및 제4.2조나호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 번에 하나의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만이 부과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의 법규에 따라,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는 권한 있는 당국이 자체
발의로 또는 서면 신청에 의하여 개시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모든 조사를 그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6. 어떠한 당사국도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나.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기간의 만료 후에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7. 당사국은 이전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종료부터, 연장을 포함하여 이전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다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적용기간이 최소 2년이어야 한다.

8.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9. 당사국이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때, 관세율은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부속서 2-나(관세 철폐)에 포함된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제7.3조 잠정 조치

1.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예비판정을 내리기 전에, 그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잠정적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의 공개본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를 명시한 공고를 자국의 관보에 공표하고, 이해당사자가 잠정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증거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공고를 공표한 날 후 최소

한 20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를 개시한 후 최소한 45일까지는 잠정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3. 적용 당사국은 잠정적으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고 그 조치의 적용 후 협의를 개시한다. 협의는 직접 대면으로 또는 협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 밖의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4. 모든 잠정 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당사국은 제7.2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7.2조제6항나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5. 그 당사국은 제7.2조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제7.1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 결과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제7.4조 보상

1. 한쪽 당사국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일 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자국과 협의할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적용 당사국은 당사국들이 상호 합의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협의는 직접 대면으로 또는 협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 밖의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2. 당사국들이 협의 개시 후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통한 보상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제2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권리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소멸된다.

4. 모든 보상은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총 적용기간을 기초로 한다.

제7.5조 절차 규칙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 절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안의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합치하는 국내 절차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7.6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조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들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려는 한쪽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조사의 개시, 그 조사의 잠정적 결과 및 최종 결과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하여 임시 서면 통보를 즉시 제공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제7.1조에 따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년도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

4. 어떠한 당사국도 이 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22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7.7조 일반규정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들은 1994년도 GATT 제6조,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그들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당사국들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가 관련 세계무역기구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 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라는 데 합의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들은 잠정조치의 부과 후, 그리고 최종판정 전에, 반덤핑 협정 제6.5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2.4조를 저해함이 없이, 확정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는 모든 필수적인 사실 및 고려사항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공개를 보장한다. 공개는 서면으로 하고,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3. 조사행위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한, 이해당사자들에게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 동안 그들의 견해를 표시하기 위한 청문 기회가 부여된다.

제7.8조 통보 및 협의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합치되게, 신청의 접수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가능한 한 빨리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협의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협의는 직접 대면으로 또는 협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 밖의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상계관세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청의 접수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는 회의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협의는 직접 대면으로 또는 협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 밖의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7.9조 약속²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덤핑과 그러한 덤핑으로 야기된 피해에 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자국의 법과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2.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보조금 지급과 그러한 보조금 지급으로 야기된 피해에 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자국의 법과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상계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에 대한, 또는 적절한 경우, 물량에 대한 약속 제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 및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7.10조 최소부과 원칙

당사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러한 관세의 세액은 덤핑 또는 상계가능 보조금 마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마진 미만의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할 경우 관세는 그 마진 미만이 되어야 할 것이 바람직하다.

제7.11조 공공이익의 고려

당사국들은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공공이익을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7.12조 공청회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들은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 조사 동안 그들의 견해 표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인지를 고려한다. 이는 조사 수행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한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반덤핑협정 제8조(가격 약속)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8조(약속)에 합치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제7.13조 재심에 의한 종료 이후 조사

당사국들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이면서 재심의 결과로 이전 12개월 내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위한 신청에 대하여 주의를 가지고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제7.14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22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정의

제7.15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7.1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의 경우, 무역위원회 또는 기획재정부
- 나. 코스타리카의 경우, 경제산업통상부(Ministerio de Economía, Industria y Comercio)의 무역구제국(Dirección de Defensa Comercial)
- 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의 무역협정운영국(Dirección de Administración de Tratados Comerciales)
- 라. 온두라스의 경우, 경제개발부(Secretaría de Estado en el Despacho de Desarrollo Económico)의 협정 운영 및 교섭 총국(Dirección General de Administración y Negociación de Tratados)
- 마. 니카라과의 경우, 산업개발통상부(Ministerio de Fomento, Industria y Comercio)의 무역협정이행교섭국(Dirección de Aplicación y Negociación de Acuerdos Comerciales), 그리고
- 바. 파나마의 경우,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Comercio e Industrias)의 국제무역 협정 및 무역방어운영국(Dirección Nacional de Administración de Tratados Comerciales Internacionales y Defensa Comercial)

또는 그들의 승계기관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 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하에서 적용되는 조치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실질적 원인이란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원인보다 덜 중요하지 아니한 원인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0년 간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의 부속서 2-나(관세 철폐)의 양허표가 그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철폐하도록 규정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과도기간은 그 양허표에 규정된 그 상품의 관세 철폐 기간에 3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